

제 106 회 거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 제 2 호 (부록)

거창군의회사무과

목 차

1.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면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면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 면
4.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1 면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심사보고서	14 면
6. 총무위원회소관2005년도가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18 면
7.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1 면
8.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24 면
9.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27 면
10.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5년도가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30 면
1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32 면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12.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1.

다. 의안번호 : 제 2004 - 51호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12. 18(총무위원회)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조직개편과 상위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등으로 인하여 조례위임대상인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중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함

나. 주요골자

- 읍·면 위임 사무 : 20개 사무
 - 위임 제외사무 : 46개 사무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등에 의한 제외 사무 : 6개 사무
- ※ 당초 66개 ⇒ 46개 사무 감축 ⇒ 20개 사무위임
- 본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조례안 별표의 업무는 현행 읍면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조례에서 그 근거규정을 두기 위함
- 위임사무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46개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등에 의한 제외사무로 타당함
- 위임하고자 하는 주민등록, 지방세 징수사무등 20개사무는 읍면에서 사무를 처리함으로서 본청 보다 근거리로 시간, 경제적 비용을 줄일수 있고 현황파악이 용이하여 행정능률과 효과를 제고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단지 우려되는 점은 이 중 지방세신고납부서처리,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 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 업무등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실무능력이 배양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 동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르로서 읍면 담당 실무자가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적법하게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 됨
-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별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위임사무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46개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등에 의한 제외사무로 개정안대로 시행하고
- 읍면에 위임하고자하는 20개 사무 중 지방세 관련 업무등은 읍면에는 현재 세무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는데도 전문성을 요하는 지방세 업무 등을 위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세무직원이 충원될 때 동 업무를 위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지방세세원조사, 지방세신고 납부서 처리, 지방세 감면신청서처리, 지방세징수, 독촉장 및 최고장 교부, 재산압류조서작성, 결손처분표 작성,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 토지건축물사업 소세과세대장의 작성 사무는 종전대로 시행하도록 별첨 수정안과 같이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안과 같음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 의 명의로 시행한다. <	개정안과 같음

소관별	개 정 안	수 정 안
	위 임 사 무 명	위임사무명
행정과	1. 읍·면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	개정안과같음
“	2. 주민등록 업무 (단,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2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사항 제외, 법 제18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외,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할 수 있다.)	개정안과같음
재무과	1. 지방세 징수	개정안과같음
“	2.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개정안과같음
“	3. 지방세 세원조사	삭 제
“	4.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개정안과같음
“	5. 지방세 신고납부서 처리	삭 제
“	6.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처리	삭 제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개정안과같음
“	8. 지방세 징수, 독촉장 및 최고장 교부, 재산압류 조서 작성, 결손처분표 작성,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삭 제
“	9.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삭 제
“	10. 토지·건축물, 사업소세 과세대장의 작성	삭 제
사회복지과	1. 매장·화장·개장·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개정안과같음
“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개정안과같음
농정과	1. 농지전용신고 및 사후관리	개정안과같음
	2. 불법 농지전용 조사보고	개정안과같음
환경 녹지과	1. 입산신고	개정안과같음
지 역 개발과	1. 광고물 등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과같음
	2. 광고물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과같음
	3. 과태료 부과·징수 (신고대상 광고물)	개정안과같음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12. 1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13.

다. 의안번호 : 제 2004 - 61호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12. 18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의2 신설)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 ~ 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적용하여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음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본 조례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특정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목적 달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정함
- 동절기(11월 ~ 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는 사항과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안 제13조, 제18조)하는 안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복무 형태가 다르면 형평성 문제와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안에 따라 거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과 체계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의결함이 타당함
-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12.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1.

다. 의안번호 : 제 2004 - 52호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12. 18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 이유

지방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률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면제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으로 그 문구를 간결화 하고,
- 국가유공자 등 배우자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함.(안 제2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배우자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장애인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 함. (안 제3조 제1항)
-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신설(안 제2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 등으로 과세를 면제·불균 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있어 어휘를 간결화하는데 있고
-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있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함
- 종합토지세개정방안은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감면세액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는것을 종합토지세의 경감에 따른 적용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12.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1.

다. 의안번호 : 제 2004 - 53호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12. 18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수승대 관광지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여름 휴가철에는 국제연극제 행사와 겹쳐 전국의 피서객이 몰려 포화 상태가 되고 있으나,
- 현행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1995. 1. 10 인상이후 9년여 동안 동결하여 인근 유사 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 시설이 노후화 되어 매년 운영비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므로
-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인근 유사 관광지 수준으로 인상하여 관광지 운영의 수지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관람료 등의 징수 근거 법령 조항을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맞게 변경함. (안 제1조)
 - 당초: 제35조 ⇒ 제64조제1항
- 관람요금을 연령별로 25% 내지 50%를 인상함.(안 별표1)
- 주차료의 적용기준을 변경하고 차종별로 주차료를 25% 내지 50%를 인상함.(안 별표2)
- 야영장 이용료를 텐트 종류별로 20% 내지 50%를 인상함.
(안 별표2)
- 썰매장 이용료를 연령별로 20% 내지 33%를 인상 함.
(안 별표2)
- 유선장 이용료를 유선 종류에 따라 33% 내지 50%를 인상함.
(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인근 유사 관광지 수준으로 인상하여 관광지 운영의 수지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함.
- 현행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인근시군과 형평성을 기울여 급격하게 인상하지 아니하고 징수료를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재정확충에도 기대가 됨
- 관광진흥법제35조(과징금의부과)제1항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규정으로 관람료 등의 징수 근거법령과 무관하므로 관광진흥법 제64조1항(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을 적용, 관람료 등의 징수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4. 12. 1
- 나. 회부일자 : 2004. 12. 1
- 다. 의안번호 : 제 2004 -57호
-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12. 8(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사유 및 취득재산의 표시

가. 제안이유

- 현대적 감각과 이미지를 고려한 읍청사 신축 및 복합문화단지 유치로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 치매요양병원 노인·여성·장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으로 위민행정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 익년도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함.

나. 취득재산의 표시

재 산 종 별	재 산 소 재 지	물건및 지목	수 량	예정금액	비 고 (소요예산)
토지 및 건물	토지4건/건물5동		8,659	4,613,999	4,968,000
	거창읍 상림리 820	건물	305	1,368,000	1,368,000
	거창읍 장팔리 9-1	전	2,030	22,127	500,000
	거창읍 장팔리 산5-1	임야	5,851	23,872	
	거창읍 송정리 산42-14	건물	293	600,000	600,000
	거창읍 송정리 산96 외8	건물	180	2,600,000	2,600,000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가. 읍청사 건축물 신축 사업비 변경

- 거창읍 청사신축은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시가지의 균형적 개발 등에 있으며,
- 현 위치에서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상에 청사를 신축(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642평)하고자 하나,
- 그 예산을 당초 3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건축설계결과 4,368백만원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코자 함이며,
- 동 사업의 추진상태와 사업비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복합문화단지 신축부지

- 복합적 문화시설의 건립을 통하여 현 거창문화센타와 더불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거창의 상징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 현 거창문화센타와 연계하여 전통문화전수회관, 거창문화원사, 전통공예센터 등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문화시설 건립 용 부지 취득에 있으며,
- 2004년부터 10년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재원 확보 및 대상 부지가 문중소유토지로서 매수협약에 있어 애로가 예상되므로 소요재원에 대한 향후 확보 방안, 문중 소유토지 매수협약 애로점 타개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군립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비 변경

- 군립치매요양병원 건립계획이 2003년도부터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병원 건축물 건립 계획과 신축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이미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토목공사비 과다와 원자재값 폭등으로 사업비가 6억원이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 동 사업의 추진상태와 사업비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라.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사업

-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노인·장애인·여성관련 복지시설을 한 장소에 건립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평당 건축비를 300여만원으로 계상하여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축비가 450만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사업비의 증가로 증액되는 26억원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이며,

- 동 사업추진 실태와 사업비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읍청사 신축 사업과 군립치매 요양병원 신축사업 그리고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온 군민과의 약속사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요청되고,

- 복합문화 단지 조성 부지 취득의 건은 부지 매입후 문화원사와 전통문화 전수회관 건립, 전통공예 센터 및 야외공연장 설치 등 문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각종시설을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건립하는 문화센터와 함께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부지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 따라서, 대형건축물은 한번 신축되면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할 유산으로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문제점을 살피고자 제114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하지 않았으나, 심의 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치매 요양병원의 진입로 확보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음.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현재 치매요양병원 건립대상지는 진 · 출입로가 협소하고 요철현상이 심하여 치매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우려되므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노인들인 치매환자들이 진 ·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로를 확장 · 포장 조치할 것을 주문.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 : 2004. 12. 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4. 12. 1.
- 다. 의안번호 : 제 2004호 - 58호
- 라. 상정일자 : 2004. 12. 15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다음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시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3.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말 현 재 액	2005년 운용			2005년말 계 획 액
		수 입	지 출	증 감	
합 계(6개기금)	1,726,262	388,361	47,500	350,535	2,078,123
아름예술제진흥기금	340,000	40,000	10,000	30,000	370,000
체 육 진 흥 기 금	12,232	7,415	0	7,415	30,647
식 품 흥 기 금	21,500	15,163	20,000	△4,837	16,663
저소득자녀장학기금	290,838	72,315	17,500	54,815	345,653
노 인 복 지 기 금	795,810	127,853	0	127,853	923,663
여 성 발 전 기 금	265,882	125,615	0	125,615	391,497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총 6개기금의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적립금의 이자 및 일반 회계 전입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기금은 아릅예술제 진흥기금 30,000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60,000천원, 노인복지기금 100,000천원, 여성발전기금 120,000천원 등 총 310,000천원이며,
- 지출은 아릅예술제 진흥기금에서 예술제 행사 보조금으로 10,000천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20,000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17,500천원, 등 총 47,500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그 외 잔여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아릅예술제 행사관련 보조금 10,000천원은 아릅예술제에 지원되는 군비의 규모에 비하여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운영비 20,000천원은 수입액(15,163천원)보다 지출액(4,837천원)이 더 많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된

것은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1인당 150천원에서 350천원을 지급하는데 이장자녀 장학금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 전체 기금에 대하여 기금 설치 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하였거나 그 효과 등을 비교 검토하여 새해 업무 보고시 별도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

5. 기금운영계획안 수정내역 : 해당없음

6.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조서 : 해당없음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4. 12. 1.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1.

다. 상정일자 : 2004. 12. 7.

(제11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라. 의안번호 : 제 2004 - 54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농지를 취득할 시 농지관리 위원에게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농지법시행령 제8조 『농지취득자격의 확인』 사항이 2002. 12. 31자로 삭제 된 사항과,
- 상위법인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농지를 취득할 시 농지관리 위원에게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농지법시행령 제8조가 삭제되어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4조제3호 및 제8조를 각각 삭제 하고자함.

(안 제4조제3호 및 제8조 삭제)

- 농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상위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협조 및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조사 협조 및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한 조례 제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삭제함.

(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

- 농지법 제47조제4항에 농지의 전용허가 및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 제10조제4항에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안 제10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사항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현재 읍·면농지위원회는 읍·면별 17~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지전용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조사 등을 위하여 개최하나,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5인 이내 소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02. 12. 31자 농지취득자격 확인제도는 근거규정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1.1부터 읍면에서는 이 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법 개정후 상당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점은 개선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시행령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이 2002년 12월31로 삭제된 사항과 조례 제4조제4호 및 제5호의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협조 및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조사협조 및 확인규정이 농지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과 중복되고, 조례 제10조 제4항의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농지법 제47조 제4항과 중복되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 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 략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4. 12. 1.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1.

다. 상정일자 : 2004. 12. 7.

(제11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라. 의안번호 : 제 2004 - 55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종전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예규로 운영되던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을 「재난관리법」에 대체 시행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위원회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로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군수)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비롯한 관내 주요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당연직 위원 12인과 기타 재난관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위원으로 하도록 규정.(안 제3조)
- 위원회 개최는 정기회 1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함. (안 제6조)

- 필요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종전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를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로 대체토록 하고, 종전의 운영규정은 폐지토록 규정함.(부칙 제2, 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등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종전 재난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와 동 조례 내용과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 위원중 당연직은 9명으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을 추가하여 12인으로 이는 재난관련 예산편성 및 주요 관련부서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종전 규정에서는 정기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토록 규정한 것을 동 조례안에서는 1회로 정한 것은 이는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정기회도 1회 개최(서면심의)한 점을 참고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능률성을 감안할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종전의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형식이나 내용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 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 략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4. 12. 1.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1.

다. 상정일자 : 2004. 12. 7.

(제11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라. 의안번호 : 제 2004 - 56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2004.3.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토록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 개최는 정기회 1회를 개최토록 하되,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함.
(안 제6조)
-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응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는 각종 안전대책수립, 건축물, 교량 등의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군수의 자문과 안전점검 등을 담당할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규정의 근거를 조례로써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률에서는 설치사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동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형식이나 내용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04. 12. 1.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4. 12. 1.

라. 상정일자 : 2004. 12. 13.

(제115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마. 의안번호 : 제 2004 - 59호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시 의회에 기금운
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을 운용하기 위
함.

3.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

(단위:천원)

구 분	2004년 말 현 재 액	2005년 운용계획안			2005년 말 현 재 액
		수 입	지 출	증 감	
계	573,486	88,756	0	88,756	662,242
재해대책기금	456,146	71,045	0	71,045	527,191
재난관리기금	117,340	17,711	0	17,711	135,051

4.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

□ 재해대책기금

-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예방시설 및 응급복구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는 기금으로 최근 3년간 지방보통세 징수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편성된 기금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지방보통세는 8,755,567천원임.
- 2005년도 기금운용안은 전년도 이월금 456,146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045천원, 예금이자수입 1,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없음.
-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부터 적립된 것으로 '99년 우량측정 장비구입에 34,095천원, '02년 소하천정비, 제설장비구입등에 145,100천원, '03년 하천정비사업 등에 10,180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원래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통세의 최근 3년간 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편성된 기금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임.
- 2005년도 기금운용안을 전년도 이월금 117,340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511천원, 예금이자수입 2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없음.
- 재해대책기금은 1998년부터 적립된 것으로 그 동안 지출실적이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 해당없음

7.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조서 : 해당없음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22. 거창군수
- 회 부 일 자 : 2004. 12. 1. (의안번호 제 2004 - 호)
- 의 결 일 자 : 2004. 1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세입예산안 대비표 (일반 + 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5 요구액	2004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170,079,290	150,267,531	33,294,263	24.3
일반 회 계	소 계	148,352,523	129,503,758	18,848,765	14.6
	지 방 세	10,924,312	9,970,036	954,276	9.6
	세 외 수 입	8,302,703	11,661,105	△3,358,402	△28.8
	지방교부세	85,501,151	61,736,000	23,765,151	38.5
	지방양여금		12,393,158	△12,393,158	△100.0
	조정교부금	3,400,000	3,435,000	△35,000	△1.0
	보조금	40,224,357	30,308,459	9,915,898	32.7
	지 방 채				
기타 특 별 회 계	소 계	8,433,367	7,281,269	1,152,098	15.8
	주 택 사 업	53,098	50,066	3,032	6.1
	농업인소득지원기금	5,724,353	4,694,515	1,029,838	21.9
	의료보호 기금	347,799	301,223	46,576	15.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04,000	284,000	20,000	7.0
	농공단지조성사업	1,363,910	1,429,700	△65,790	△4.6
	주차장 관리	640,207	521,765	118,442	22.7
공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	13,298,400	13,482,486	△189,086	△1.4
	상수도공기업	4,817,009	6,633,686	△1,816,677	△27.4
	하수도공기업	8,476,391	6,848,800	1,627,591	23.8

3. 세출예산안 대비표 (일반 + 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5 요구액	2004 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170,079,290	150,267,513	19,811,777	13.2
일반회계	소 계	148,352,523	129,503,758	18,848,765	14.6
	일반행정비	50,671,916	45,092,338	5,579,578	12.4
	사회개발비	40,894,709	34,604,986	6,289,723	18.2
	경제개발비	54,221,583	46,779,012	7,442,571	15.9
	민방위비	390,821	398,907	△8,086	△2.0
	지원및기타경비	2,173,494	2,628,515	△455,021	△17.3
기타특별회계	소 계	8,433,367	7,281,269	△1,152,098	15.8
	주택사업	53,098	50,066	3,032	6.1
	농업발전기금	5,724,353	4,694,515	1,029,838	21.9
	의료보호 기금	347,799	301,223	46,576	15.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04,000	284,000	20,000	7.0
	농공단지조성사업	1,363,910	1,429,700	△65,790	△4.6
	주차장 관리	640,207	521,765	118,442	22.7
공기업특별	소 계	13,293,400	13,482,486	△189,086	△1.4
	상수도공기업	4,817,009	6,633,686	△1,816,677	△27.4
	하수도공기업	8,476,391	6,848,800	1,627,591	23.8

4. 심 사 결 과

■ 세입예산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출예산

가.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9건 468,400천원을 삭감.
-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 사업 1,435,000천원은 민간자본 보조 과목에서 임차료 과목으로 목 변경하고
- 계속비사업 조서 중 읍민생활 공원조성사업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로 사업기간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면적과 사업비는 당초안과 같이하며
-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2건에 37,509천원을 삭감.
 -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31,717천원을 삭감.
 -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5,792천원을 삭감한
-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

5. 집행부 주문 사항

가.복합문화 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원사, 전통문화 전수회관, 야외 공연장 등이 건립 될 경우를 대비한 주차장 확보 등 사업규모에 걸맞게 위치를 재선정해서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나.치매 요양병원에 대하여는 진입로 확장·포장과 병원건립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다. 국제 연극제 기반확충 및 주차장 사업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거창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라. 지역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하여는 2005년도 예산은 승인하되 지역정보센터 스스로 자생력을 배양하여 운영하고, 2006년부터는 운영비 명목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문하며,

마. 각종 기금은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설치 당시와 현재 여건 등을 비교하여 기금의 개폐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별도로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 요청하였으며,

바. 합천댐 정비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된 7개면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사.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상자 확대 시행.

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 확대 시행.

6. 세입예산안 수정내역 : 해당 없음

7.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o 세출예산(일반 + 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요구예산액	삭감액	승 인 액	비 고
합 계		170,079,290	0	170,079,290	
일반 회 계	소 계	148,352,523	0	148,352,523	
	일반행정비	50,671,916	△32,000	50,639,916	
	사회개발비	40,894,709	△1,400	40,893,309	
	경제개발비	54,221,583	△435,000	53,786,583	
	민방위비	390,821	0	390,821	
	지원및기타경비	2,173,494	468,400	2,641,894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8,433,367	0	84,33,367	
	주 택 사 업	53,098	0	53,098	
	농업발전기금	5,724,353	0	5,724,353	
	의료보호 기금	347,799	0	347,79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04,000	0	304,000	
	농공단지조성사업	1,363,910	0	1,363,910	
	주차장 관리	640,207	0	640,207	
공 기 업 특 별	소 계	13,293,400	△37,509	13,293,400	삭감액예비비 로 전환
	상수도공기업	4,817,009	△31,717	4,817,009	삭감액예비비 로 전환
	하수도공기업	8,476,391	△5,792	8,476,391	“

8. 세출예산안 삭감조서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사 유	비 고
관	항					
		7건	4,966,245	468,400		
일반행정	공보관리	기타 일반 수용비	369,445	6,000	예산과다 계상	
교육 및 문화	교육 및 문화	마라톤 대회	80,000	10,000	참가비 등 자체 재원으로 충당	
“	문화 및 체육	거창국제연극제개최지원	290,000	10,000	예년 수준으로 동결	
“	문화 및 체육	페러글라이딩 안내판 설치	9,000	6,000	안내판 1개소 설치, 임시안내판으로 대체	
농수산 개발	농업소 득관리	거창농협연합종합미곡처리장시설개선사업	300,000	100,000	예산과다계상 (자구노력강구)	
교통관리	교통행정	교통신호기 설치	70,000	35,000	불요불급한예산	
환경개선 관리	환경정비	1회용품 위반 업소 신고보상	2,800	1,400	예산과다계상	
산림자원 개발	녹지공원 관리	생활주변 나무심기	2,410,000	300,000	군비부담과중 (소공원조성사업 9억중3억삭감)	
농수산 개발	축수산 관리	브랜드육 전문점설치 (민간자본보조)	1,435,000		임차료 목으로 목변경(과목변경)	예산과목 부적정

나.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사 유	비 고
관	항					
		2건	37,509	37,509		
상수도 사업비용	일반 관리비	성과상여금	31,717	31,717	일반회계와 이중계상	
하수도 사업비용	하수관리	성과상여금	5,792	5,792	일반회계와 이중계상	